

최신 판례 예규

Marketing Tax consulting

공익법인이 기부금품 모집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기부금품을 받은 경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함

기재부장관으로부터 지정·고시된 법인이 기부금품법상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금품을 기부받는 경우 기부받는 때에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함

사전법령법인-793, 2021.06.29

질 의

-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고시된 내국법인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금을 기부받는 경우
 - 「법인세법」 제75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등으로 지정·고시된 내국법인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 기부금품을 기부 받는 경우 해당 기부자에게 「법인세법」 제75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내국인 신규근로자가 입사한 월의 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입사한 월에 대한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중 하나의 납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입사한 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임

사전법령소득-341, 2021.06.30

질 의

- 질의인의 사업장에 '20.04.20. 입사한 A는 '20.4월 중 근무일수가 적은 관계로 당해 월의 급여가 낮아, 질의인은 A의 4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고,
 - 입사 월인 4월분에 대한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은 없음

질의내용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신규근로자에 대하여, 입사 월에 근무일수가 적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고,
 -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 사업자는 조특령§ 23⑩(6)의 규정을 적용하여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산정시, 동 신규근로자를 입사 월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

회 신

귀 해석요청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신규근로자가 입사한 월의 근무일수가 적어 당해 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입사한 월에 대한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

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중 하나의 납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7 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입사한 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이며, 해당 근로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승계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요건을 충족함

법인세제과-324, 2021.07.09

질 의

-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해당 여부

회 신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할 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2호를 충족하는 것임

기존 신고내용연수가 그 범위 내에 해당되지 않아 개정된 기준내용연수에서 100분의 25를 가감한 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따라 내용연수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사전법령재산-699, 2021.07.08

질 의

- ○○○○○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서 舊「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금형이 공구에 해당되어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함
- 시행령 개정으로 금형이 공구에서 제외됨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6*」을 적용해야 되는지 검토중

*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

질의내용

-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 제2호의 세법 개정*으로 즉시상각대상에 해당하는 자산 중 공구에서 금형이 제외됨에 따라 금형의 기준내용연수 적용방법
* 〈부칙 제30396호, 2020.2.11.〉 202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회 신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2014. 1. 1. 이후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 제2호의 개정세법(제30396호, 2020. 2. 11.)은 202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자산의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적용하던 신고내용연수가 개정된 기준내용연수에 따른 신고내용연수 범위 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기존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기존 신고내용연수가 그 범위 내에 해당되지 않아 개정된 기준내용연수에서 100분의 25를 가감한 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내용연수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